

##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위한 소지가 있다는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### <보도내용>

- 2026.7.19. 파이낸셜뉴스는 「미래대응기금-세수결손 추경, 걸림돌은 헌법」 기사에서,
  - “세수변동 안정장치로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고, 세수결손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”하고 있으며,
  - “기금과 추경으로 자동대응하려면 의무화가 필요한데, 이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”고 보도했습니다.

### <기획예산처 입장>

- 미래대응기금 신설시 추가세수가 기금에 적립되며, 미래대응기금의 기금 변경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56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- \*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
- 따라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기획예산처<br>예산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정애 (044-214-2330)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| 하치승 (hcs017@korea.kr)  |
|       | 기금운용혁신과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성준 (bbakko0@korea.kr) |